

**박상우 변호사 「말랑말랑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문제집」
초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(2024-02-22)**

p.34 본문 해설 L. 교체

- 〈변경 전〉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이상 그것으로써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명하는 병역법상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, 그 후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원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초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에 관하여 다시 의무이행기일을 정하여 알려주는 연기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,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(대판 2005.10.28. 2003두14550).
- 〈변경 후〉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(대판 2005.7.8. 2005두487).

p.85~86 본문 해설 ②·③·④·⑤ 판례이름 삭제

- 〈삭제〉 ② (×) … (대판 2007.9.20. 2005두6935 [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]).
 ③ (○) … (대판 1992.5.8. 91누7552 [접견허가거부처분취소]).
 ④ (○) … (대판 2007.4.12. 2004두7924 [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]).
 ⑤ (○) … (대판 1998.9.4. 97누19588 [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]).

p.354 문제박스 문제박스 지문 수정

〈변경 전〉

ㄱ. 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**관리처분계획** 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

〈변경 후〉

ㄱ. 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